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바로 알기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4.9.19. _ Vol.447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한국산재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바로 알기

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R&D센터 UD·시니어주거연구팀 배용호 이사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었던 장애인등편의법의 기준보다 훨씬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가 지향하는 것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지향하는 것은 목적과 방향이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한계도 있어 최우수인증 받은 대상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과 접근이 가장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 최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개정에 대한 연구와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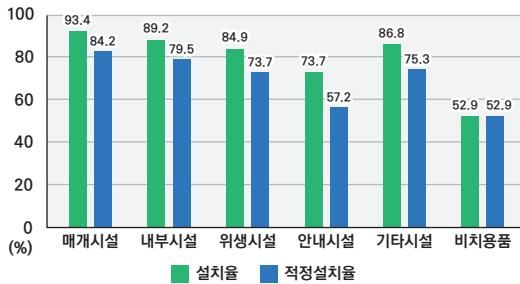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01 장애인 접근성과 접근권의 보장

■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율

- 접근성은 장애인이 건물(시설), 교통수단 및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율로 판단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전수조사)를 조사함
-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시설은 190,991개, 조사 항목은 6,440,413개이며,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서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사이에는 10%의 차이를 보임(안성준 외, 2023)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편의시설 실태조사

- 적정설치율은 편의시설 설치 항목 중 법적 기준으로 설치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설치율보다 더 중요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음
- 적정설치율이 설치율과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을 의미함. 첫째, 법적 기준으로 설

치되지 않는 편의시설이 많다는 것과, 둘째, 법적 기준으로 설치되지 않은 편의시설은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실제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것임

- 따라서 적정설치율의 조사와 함께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은 원인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편의시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과 설비이므로 예산 낭비와 장애인의 이용 불가로 인한 접근성 감소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증가시킴

■ 접근권 보장의 3가지 방법

-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의 다른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며 동시에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권리임
- 접근권은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임(「장애인등편의법」 제4조(접근권))
-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장애인 등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둘째, 장애인의 접근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 셋째, 처음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등임
- 첫째 방법을 지원하는 법률은 장애인등편의법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편의시설의 설치에 계단 등 단차가 있는 곳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일반 화장실만 있는 곳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위해 점자촉지도와 점자블록 등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설치하는 것임
- 둘째 방법을 지원하는 제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BF 인증제도)로서, 이 제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고시에 의해 운영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지역과 건축물 등 개별시설물 등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을 위한 지표와 기준을 정해주고 있음
- BF 인증 기준에서도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는 장애인 등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음
- 접근로를 예로 들자면, 편의시설 설치에서는 1.2m 이상의 유효폭으로 바닥마감이 평탄하고 기울기는 1/18 이하로 접근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면, BF 인증제도에서는 유효폭, 바닥마감, 기울기 외에 차량 간섭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50%이상 차로와 분리된 보행로의 확보(최우수 등급)를 규정하고 있음
- 셋째 방법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임.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물의 제거 뿐 아니라 처음부터 장애물을 두지 않는 디자인(설계)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은 「서울

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추진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방법은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물의 제거보다 훨씬 포괄적인 접근성 확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환경이 아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교통약자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환경이 아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환경 조성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예로 든다면, 편의시설 설치에서는 일반화장실을 설치하고, 일반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추가하는 방식이며, BF 인증제도에서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전체 층수의 30%이상(우수등급) 또는 50%이상(최우수등급)의 층에 설치하는 방식이고, 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 모든 화장실을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변기간도 남녀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그와 별도로, 가족·성이 다른 활동지원인·성소수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가족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임. 최근의 추세는 모든 대변기간을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넓고 크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 이번 리포트에서는 둘째 방법인 BF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첫째 방법인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와 제도 및 기준을 비교하고 BF 인증제도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0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도입과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

BF 인증제도의 의미

- BF 인증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에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인증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음(김성희 외, 2018)
- BF 인증제도는 2008년 7월 5일에 국토교통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으며, 현재 이 지침은 폐지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BF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3년마다 주관부처를 번갈아가며 담당하고 있음
- BF 인증은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9개 인증기관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도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증업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인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음

| 구분 | 인증기관명 |
|----|-------------|
| 1 | 한국장애인개발원 |
| 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3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 4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5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 6 | 한국부동산원 |
| 7 | 한국녹색기후기술원 |
| 8 | 한국크레비스인증원 |
| 9 | 한국농어촌공사 |

2024년 현재 BF 인증 기관

BF 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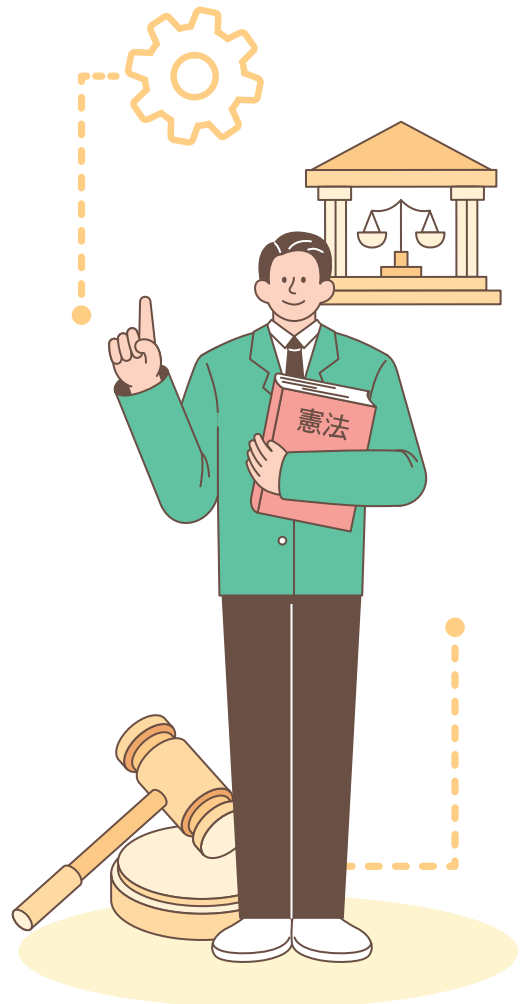
- BF 인증 대상은 지역과 개별시설로 구분되며, 개별시설에는 도로, 공원, 건축물, 교통시설, 교통수단이 해당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개축·증축하는 공공시설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과 철도시설, 공항 등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획득해야 함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17조의2)



BF 인증을 획득한 시설의 인증 현판
@배용호

- BF 인증 등급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 등급으로 나뉘며, 최우수등급은 인증 기준의 90% 이상 충족, 우수등급은 80% 이상 충족, 일반등급은 70% 이상 충족할 경우 부여됨
- 인증을 받은 경우 시설물 입구에 부착할 수 있도록 인증현판과 인증서를 교부함. 현판에는 인증시설명, 인증등급, 인증유효기간, 인증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음(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4)
- BF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며,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본인증은 준공단계에서 받아야 하며, 본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점까지 본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예비인증은 효력을 상실함.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10년 후에는 인증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 3)
- 2008년도부터 시작된 BF 인증은 2024년 8월 말까지 16,752건을 인증하였으며, 이 중 예비인증은 10,759건, 본인증은 5,993건임
- 인증 등급별로 보면, 최우수등급 447건, 우수등급 15,488건 그리고 일반등급이 817건으로서, 우수등급이 대다수임
- 인증 대상별로 보면, 건축물이 16,25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객시설 328건, 공원 153건, 도로 9건, 교통수단 11건, 지역 1건 등임
- 이처럼 인증은 늘어나지만, 지역에 대한 인증, 도로 및 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은 여전히 인증 건수가 적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또한 공원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2019년)에 따라 도시공원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2021년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공원부터 적용이 됨. 이에 따

라 2021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 공원은 모두 제외가 되며, 2021년 이후에 착공하는 공원이라도 2021년 이전에 입안을 했으면 모두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입안 시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03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차이

■ 목적의 차이

-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은 장애인등의 시설과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이용과 접근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참여와 복지 증진임(장애인등편의법 제1조)
- BF 인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 등이 도시, 교통 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 촉진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1조)
-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등 개인의 시설(건축물)과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을 통해 개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이 목적인 반면에 BF 인증제도는 BF 생활환경의 조성 및 촉진이 목적임. 즉, 장애인등편의법은 개인의 편의증진이 목적이며, BF 인증제도는 지역 및 개별 시설물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임
- 이처럼 서로 다른 목적의 차이는 인증 기준과 실제 적용에서도 나타남. 장애인등 개인의 편의증진이 목적인 편의시설 설치의 장애인 등 개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설비에 초점을 두지만, BF 인증은 개인의 편의보다는 시설 전체의 BF 기준 적용과 시설 전체의 BF 조성에 초점을 둬. 즉, BF 인증제도는 도시와 생활환경의 BF 적용을 통한 환경의 개선과 변화가 우선임

■ 절차의 차이

-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의 건

축허가를 위한 설계도면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반영하고 준공이 되면,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를 받은 후 수정·보완하면 사용이 승인됨

- BF 인증은 설계단계에서 BF 인증 기준을 반영하여 예비인증을 신청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설계 심사)와 인증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하면 예비인증을 취득함. 이후 준공 전에 본인증을 신청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사(현장 심사)와 인증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하면 본인증을 취득함
-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 후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만 받으면 완료가 되나, BF 인증은 예비인증에서의 심사와 심의, 본인증에서의 심사와 심의를 모두 거쳐야만 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보다 까다롭고 많은 시간을 요구함

■ 인증 대상의 차이

-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에 관계 없이 시설의 용도 및 면적으로 정해지며, 대상시설이 되면,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 BF 인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 주로 공공시설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민간의 경우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또는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계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 인원이 5천명 이상인 지하연계시설만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함
- 예를 들어, 2022년 이후에 신축된 5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슈퍼마켓 등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와 출입문 유효폭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BF 인증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하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슈퍼마켓 등만 인증 대상이 됨

■ 기준의 차이

-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보다 BF 인증 기준은 훨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
- 접근로의 경우 접근로의 기울기도 장애인등편의법은 1/12 이하(약 4.8도)면 가능하나 BF 인증 기준은 1/18 이하(약 3.2도)여야 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으려면 1/24 이하(약 2.4도)여야 함
- BF 인증 기준에 의하면 모든 접근로의 50% 이상은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보행로여야 함(최우수등급).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보행로는 차량과의 교행이 없고, 차량이 접근할 수 없도록 별도의 보행로 설치 또는 차로와의 경계를 울타리나 연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함

- 접근로의 유효폭에서도 장애인등편의법은 1.2m 이상을 요구하나, BF 인증 기준은 1.8m를 요구함(최우수등급)
- 주출입구 단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단차가 2cm 이상일 경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면 되지만, BF 인증 기준은 완전한 무단차를 요구함(최우수등급). 물론 우수등급이나 일반등급의 경우에는 단차가 있을 경우 1/12 이하의 기울기를 갖춘 경사로를 BF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되지만, 인증기관의 심사와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단차 없이 수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차로와 완전히 분리된 보행로 @배용호



우수등급 건축물이지만 단차 없이 수평 접근이 가능한 주출입구 설치 사례 @배용호

- 출입문의 형태에 있어서도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도어체크와 출입문의 유효폭만 정해주고 있지만, BF 인증에서는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의 60%이상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최우수등급).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인증을 받는 건축물들은 최소한 주출입문 중 하나는 자동문으로 설치되고 있음

- 바닥마감 부분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라고 간단히 기술하고 있으나 BF 인증에서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미끄럼저항계수(CSR) 0.4 이상의 기준값’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함. 따라서 현재 BF 인증기관에서는 방풍실의 경우 ‘화강석 잔다듬’ 방식의 바닥마감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상하 이동의 경우에도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계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승강기’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되지만, BF 인증에서는 2개 층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경사로 기울기에서도 장애인등편의법은 실내에 설치하고, 상시 관리인이 있으며, 공간과 구조상 1/12 이하 기울기가 어렵다면, 1/8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하지만, BF 인증에서는 1/8 이하의 기울기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12이하(우수등급) 또는 1/18이하(최우수등급)의 기울기를 확보하여야 함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서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경사형 거울과 전면 거울이 모두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으나, BF 인증에서는 세면대 양측에 상하회전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거울은 경사형이 아닌 전면거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것은 BF 인증에서는 장애인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하

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지향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면거울이 휠체어 사용자처럼 앉아서 보는 사람과 서서보는 거울을 보는 사람 등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임



세면대 양측에 상하회전 손잡이(핸드레일)와 전면 거울을 설치한 사례
@배용호

- 피난 부분도 BF 인증의 강점이 보이는 분야임.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정보·피난 설비에서 비상경보등과 피난구유도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BF 인증 기준에서는 정기적인 피난 훈련 계획과 매뉴얼 구비 여부,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최우수등급),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우수등급 이상) 등 피난과 구조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있음

04 BF 인증 사례

- 실제 BF 인증을 받은 건물을 통해 BF 인증의 사례를 살펴보면, BF 인증의 기준과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음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과 보행자가 교행하는 곳으로서 BF 인증에서는 차량진출입구 전면에 보행자 횡단 표시를 하고 수평으로 조성하여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하고 차량이 보행자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차량진출입구 보행 표시 사례 @배용호



- 배수구는 반드시 좌우 2cm 이하의 간격을 가진 제품을 설치하여 휠체어 바퀴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함



간격이 좁은 배수구 설치 사례 @배용호

- 계단하부 등 충돌 위험이 있는 곳에는 보행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나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함



계단 하부 보행자 충돌 방지용 안전펜스 설치 사례 @배용호

- 주출입문은 가능한 자동문으로 설치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함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한 사례 @배용호

- 주출입문 근처에 촉지도식안내판을 설치하고 출입문과 촉지도식안내판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주출입문 옆 촉지도식안내판과 점형블록 설치 @배용호

- 출입문 옆에 시설명 또는 실명을 점자표 표기하여 시각장애인도 쉽게 시설명과 실명을 알 수 있도록 함



출입문에 설치된 실명 점자표기 사례 @배용호

- 촉지도를 통해 건물의 내부 구조를 안내하고 호출벨을 통해 직원과 통화할 수 있도록 안내 하도록 함



촉지도식안내판에 호출벨이 설치된 사례 @배용호

- 가능한 실내 일반출입문도 자동문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함



자동문으로 설치한 실내 출입문 @배용호

- 계단 손잡이 끝을 30cm 수평 연장하고 그곳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위치와 방향을 안내하도록 함



계단 손잡이 끝에 점자가 표시된 사례 @배용호

- 계단 시작과 끝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계단코에는 미끄럼 방지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해 색상과 재질을 다르게 함



계단의 점형블록과 계단코의 시인성 확보 사례 @배용호

- 장애인이용가능화장실의 대변기 전면에는 휠체어의 회전을 위해 1.4m×1.4m의 회전공간을 확보하고 대변기 한쪽 측면에는 0.75m 이상의 휠체어 접근 공간을 확보함
- BF 인증에서는 전체 대변기칸의 크기 확보와 함께, 대변기 전면공간 및 측면공간 확보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대변기 설치 방향은 반드시 대변기칸의 긴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출입문과 대각선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대변기 전면 및 측면 공간 확보 사례 @배용호

- 대변기칸의 내부 자동문버튼은 벽 끝에서 0.4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설치함



벽에서 0.4m 떨어져 설치한 자동문 버튼 @배용호

- 대변기 옆 벽면 0.8~0.9m와 벽면 하부 0.2m에는 비상호출벨을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대변기에 앉아서도 비상호출벨을 누를 수 있고, 바닥에 쓰러져도 비상호출벨을 누를 수 있도록 함

- 실내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벨이 울릴 때 시각경보기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비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시각경보기가 깜박거리서 청각장애인에게 비상 상황을 알려 줌



대변기 상부와 하부에 설치된 비상호출벨 @배용호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시각경보기 @배용호

- 엘리베이터의 경우 내부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가로조작반을 설치하는데, BF 인증에서는 가로조작반을 벽 끝이 아닌 벽 중앙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조작반과 내부 수평손잡이가 겹치지 않도록 가로조작반은 높이 0.85m 내외, 내부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 내외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엘리베이터 버튼 전면에는 점형블록 2장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버튼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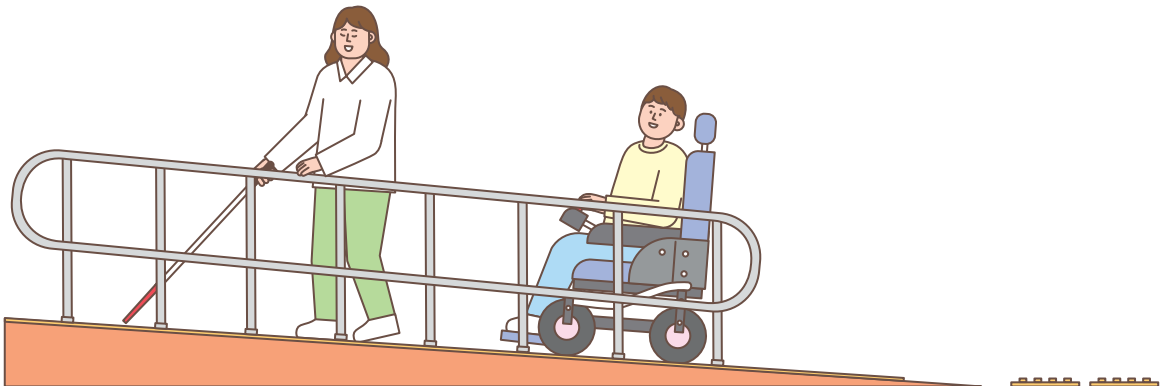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내부 벽 중앙에 설치되고 내부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된 가로조작반 @배용호



엘리베이터 버튼 전면의 점형블록 설치 @배용호

- 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BF 인증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세세하게 정하지 않은 부분 까지도 심사나 심의과정에서 세밀하게 고려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05 정책제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한계와 개선점

- BF 인증제도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음
- 첫째, 민간 시설에 대한 인증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의 문제임. 현재 민간시설의 경우 초고층과 지하연계복합시설 외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민간시설의 BF 인증은 거의 없음. 따라서 민간시설에 대한 인증 활성화가 필요함
- 둘째, BF 인증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BF 인증으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시설이 최고의 접근성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음. 최우수등급의 경우 인증 기준 상 90% 이상을 충족한 것이므로 100% 충족은 아님. 따라서 최우수등급 건물이 완벽한 건물은 아니라는 것 등 BF 인증제도에 대한 오해 해소와 BF 인증제도의 목적이 편의시설 설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아울러 BF 인증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이라는 인식 제고도 필요함
- 셋째, BF 인증제도는 향후 유니버설디자인을 향해 나아가야 함. 현재 우리나라의 BF 인증

제도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취지에 가깝게 나아가고 있으나 완전히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향후 국가 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 BF 인증제도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김성희·이동석·오육찬·김희성·배용호·오다은. 20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성준 외. 2023.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배용호. 2021. BF 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에이블뉴스. 2021.11.3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적 현황



제31회 강원특별자치도 한마음교류대회

장애인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는가

2024. 10. 15.(화) ~ 10. 16.(수)
속초 마레몬스호텔 / 금호리조트

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rea Federation of Disability Organizations

 (사)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지원 :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SOKCHO